

기부금관련 세법개정 내용과 기부금단체의 대응방안

2018년 10월 24일

서희열 교수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정부는 2018년 1월 1일자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개정하여(2020년 12월 31일 까지 3년간 적용유예) 앞으로 지정기부금단체들은 기획재정부 세제실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만 기부금을 수수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의 역행을 하고 있음

정부는 2014년 부터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소득공제 제도' 로부터 '세액공제 제도' 로 개정된 바 있음. 이로 인해 기부금 총액이 상당히 축소된바 있음

또한 수원시 소재 주간지에 대한 증여세과세 소송문제로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상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부문화 활성화나 정착화도 되어있지 않는 바 최근 세법상 기부금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기부금 제도를 더욱 강화·규제함으로써 앞으로 기부문화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여짐

I. 서론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사회과학연구방법중 문헌적연구방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현행 세법중 기부금 관련 규정이 불합리한 내용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기로 함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제1절 기부금에 관한 일반론

1. 기부금의 개념

가. 기부금의 의의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법령 35①(1)). 기부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본래 손금이 될 수 없음 그러나 기부금 가운데 기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실상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것은 일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인정하고 있음

기부금은 법령상 지출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과금과 구분되고,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된다는 점에서 접대비와 구분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광고선전비와 구분됨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1. 기부금의 개념

나. 기부금의 요건

1)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기부

기부금이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저가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고가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법령 35 (2)). 이는 의제기부금 또는 간주기부금이라고 하며, 정상가액이란 시가의 30%를 가감한 금액을 말함

이러한 의제기부금 규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만일 특수관계인과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가 이루어지면 의제기부금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바로 적용되게 됨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1. 기부금의 개념

한편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손금불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처에 따라서 기부금의 종류를 구분하여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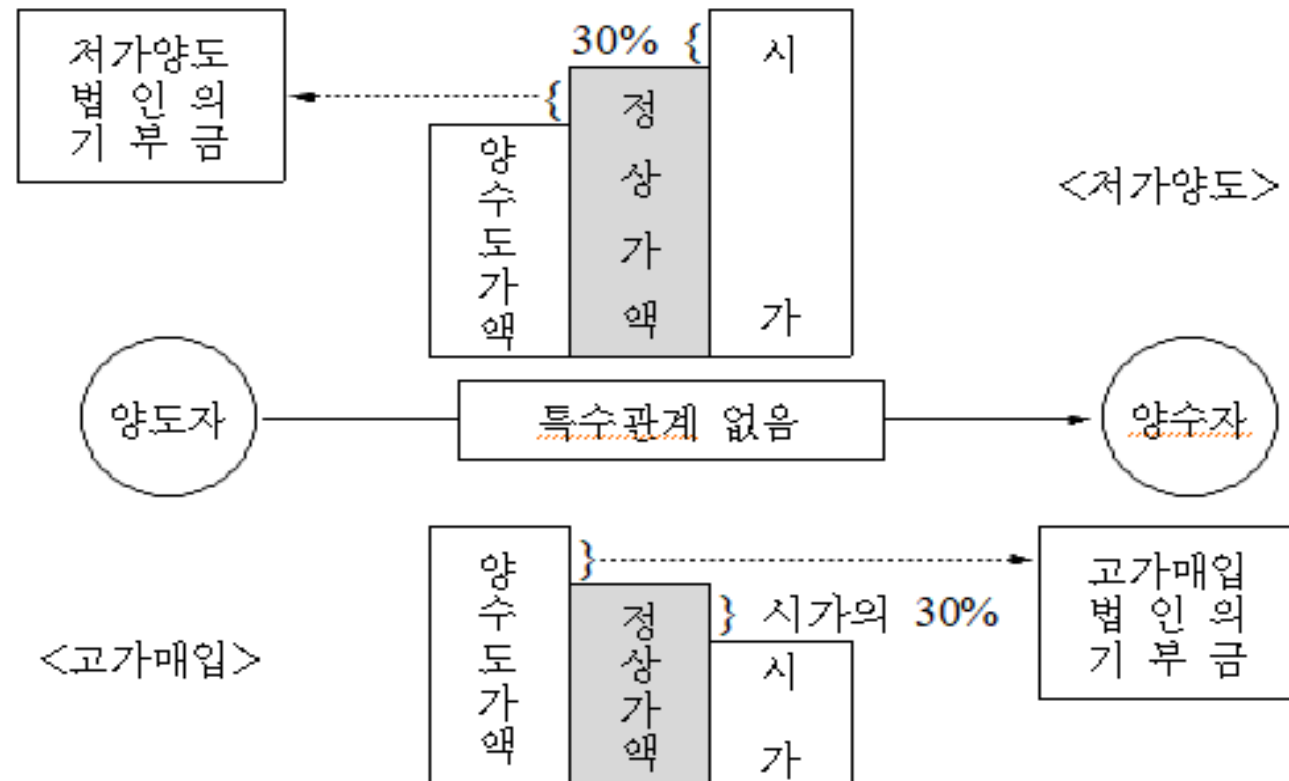
따라서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한다면 이는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는 기부금이 아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을 받게됨

그러나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단체 등 공익성이 있는 곳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성단체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더라도 이를 기부금으로 봄(법기통 24 - 36...6).

II.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1. 기부금의 개념

<그림> 의제기부금 도해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1. 기부금의 개념

2) 사업무관성

기부금은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임 따라서 기부금은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야 함

여기서 사업관련성은 해당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무관성은 기부금이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와 구별되는 기준이 되기도 함 즉, 기부금,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는 무상지출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기부금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1. 기부금의 개념

<표> 기부금·접대비·공과금 및 광고선전비 비교

종 류	구 분 기 준		
기 부 금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임의성	
공 과 금	업무와 관련된 지출	강제성	
접 대 비		특정고객에 지출	임의성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에 지출	임의성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1. 기부금의 개념

3) 무상으로 지출하는 증여의 가액

기부금은 기부자가 수증자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수여받아야 하는 무상성의 특징이 있음 여기서 무상으로 주는 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무상 지출에 의한 증여로 인하여 기부자의 재산은 감소하고 수증자의 재산은 증가함

또한 기부는 재산을 직접적으로 무상 증여하는 방법 이외에 채무면제,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변제, 무이자부의 자금대여, 무상의 임대차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도 포함됨 또한 자사의 고가양수나 저가양도 등을 통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또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음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1. 기부금의 개념

4) 자발적 의사

기부자의 기부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기부의 자발적 의사의 특징은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공과금과 구별되는 기준이 됨 즉, 공과금은 납부자가 법률에 의하여 납부가 강제되지만, 기부는 기부자의 기부행위가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도 강제되지 않음

만약 재산적 가액의 무상지출이 법률상 강제되지 않고 행정관청 등의 권유나 증용, 행정지도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강제적 지출로 볼 수 없을 것임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협회의 회비 중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별회비 및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단체로서 법인이 아니고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봄(법령 35①(3))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2. 기부금의 범위

기부금은 크게 증여, 유증, 채무면제, 채무인수, 채무의 제3자 변제, 혼합증여, 용역기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러한 기부금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증여

나. 유증

다. 채무면제

라. 채무인수

마. 채무의 제3자 변제

바. 혼합증여

사. 용역기부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제2절 기부금 단체에 관한 일반론

1. 기부금단체 현황

우리나라의 기부금단체는 크게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로 구분됨 이와 같은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구분은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의 조세 혜택에 차이를 가져옴 또한 개인 기부자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를 통해 조세 혜택을 받게 되며, 법인 기부자의 경우 손금산입의 조세 혜택을 받게 됨

지금까지 기부금 단체의 관리기관은 기획재정부였으나, 2014년부터 국세청으로 이관됨 이는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국세청의 기부금단체에 대한 관리는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횡령이나 기부금에 대한 가짜 영수증 발급 등의 불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구분은 기부금단체의 공익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함 구체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및 비영리교육재단(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을 기부받는 경우에 한함) 등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큰 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로 함 그리고 사회복지·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종교단체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작은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하고 있음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2.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복지 활동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부금단체로 정하는 단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됨

<표>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법정기부금단체

구 분	지 정 대 상	관련 법령
지정기부금단체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체	법령§36 ① 1호 바목
법정기부금단체	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체	법법§24② 4호(자목), 6호, 7호 법령§36의2 ③, ④, ⑤

⇒ 지정기부금단체 확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 법령> 고시·공고·시침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3.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요건·지정절차·지정기간·지정취소

가. 지정요건

-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이 인정될 것
- ②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포함
- ③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정관상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 포함
- ④ 지정 연도와 직전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⑤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를 받은 경우 3년 이상이 경과(개정전 : 5년→3년)
- ⑥ 삭제(개정전 : 수익사업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3.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요건·지정절차·지정기간·지정취소

나. 지정절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 기부금단체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분기별로 지정함

→ 2018. 4. 1. 이후 지정분부터 적용한다.

다. 지정기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지정기간'이라 함) '지정기부금'으로 봄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3.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요건·지정절차·지정기간·지정취소

라. 지정취소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함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단, 가산세 포함은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②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 지정요건 및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실 또는 주무관청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④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⑤ 해산한 경우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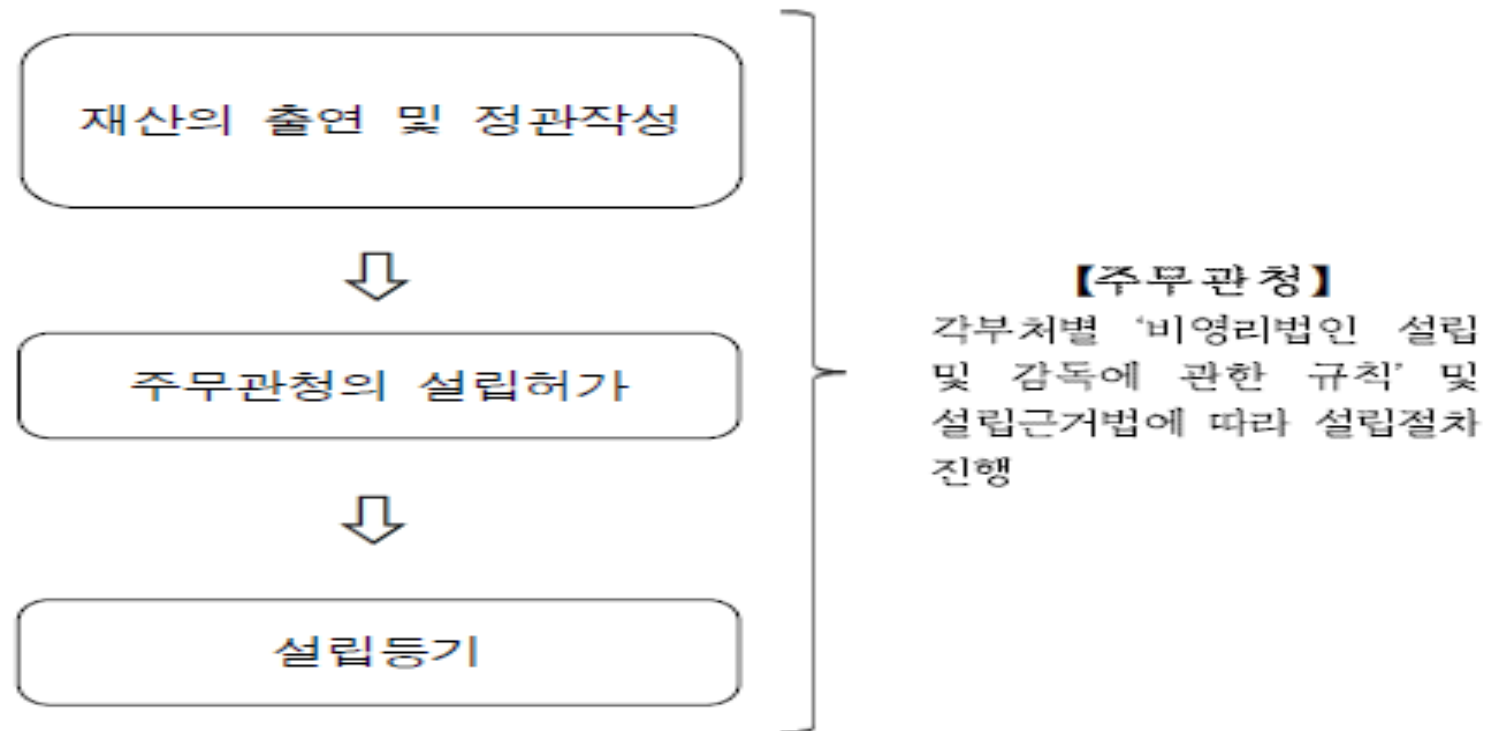
4. 지정기부금 단체의 사후관리 요건

- ①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경우
- ② 법인이 해산한 경우
- ③ 홈페이지와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미공개
- ④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
- ⑤ 수익사업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의무 위배
- ⑥ 지정요건 중 '정관상 공익목적이 인정, 정관상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 정관상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미충족
- ⑦ 상속·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 추징되거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다만, 가산세 합산은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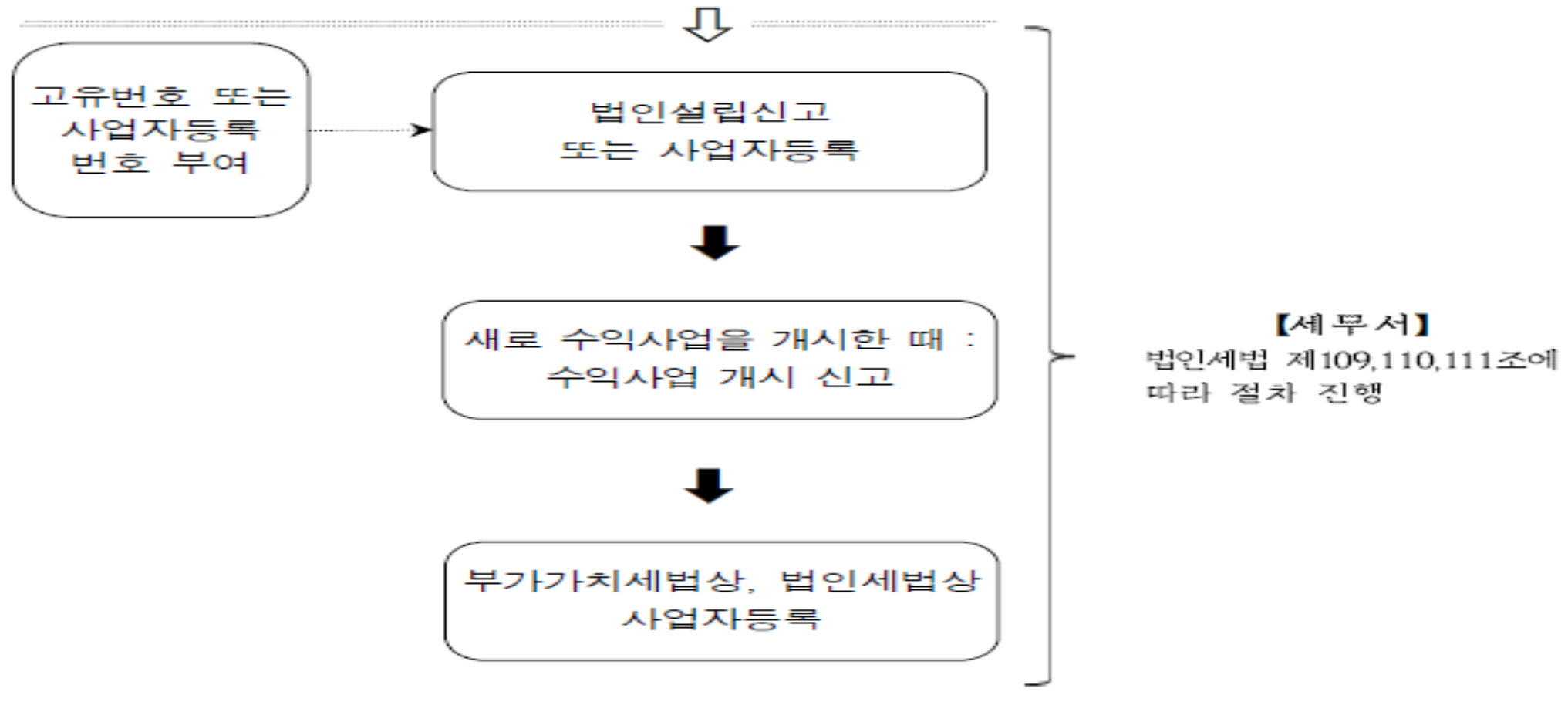
5. 비영리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비영리법인의 법인설립신고절차 및 사업자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음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5. 비영리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6.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

주무관청	소관 사무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 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교육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 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외교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
통일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법무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6.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

국방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행정안전부	국무회의의 사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산업통상자원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보건복지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6.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

환경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에 관한 사무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7. 주무관청의 법인업무 위임 또는 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등에 위임

주무관청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관련 비영리법인),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과천과학관장(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 소재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국립중앙과학관장(그외 소재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교육부	교육감
외교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행정안전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방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문화재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7. 주무관청의 법인업무 위임 또는 위탁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농촌진흥청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도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환경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여성가족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국토교통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수산 및 해양 레저스포츠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8.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분

가. 민법상 구분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8.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분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구분

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목적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중 일부 유형임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8.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분

다. 법인세법상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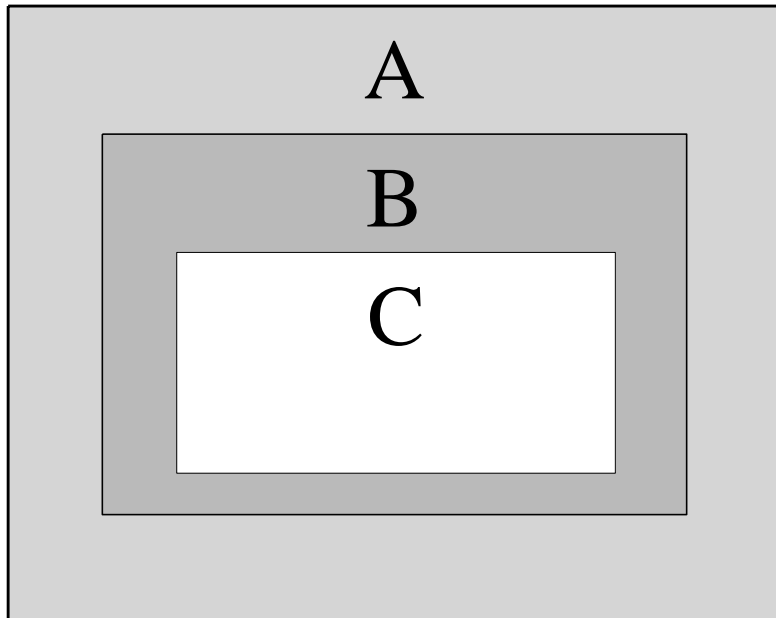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함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 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9.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A : 비영리법인

B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C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Ⅱ. 기부금 및 기부금단체에 관한 일반론

10. 공익법인의 설립근거법

공익의 유형	설립근거법
종교	「민법」, 기타 특별법 등
학술, 장학, 자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교육	「사립학교법」 등
의료	「의료법」
문화 예술	「문화예술진흥법」
기타	「민법」, 기타 특별법 등

Ⅱ. 비영리 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일반론

제3절 기부금 제도의 세법상 규정

1. 기부금의 손금산입 제도 변천

- 가. 법정기부금 제도의 변천
- 나. 지정기부금 제도의 변천
- 다. 특례기부금 제도의 변천

Ⅱ. 비영리 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일반론

2. 법인세법상 기부금 관련 규정

가. 기부금 종류

- 1) 법정기부금
- 2) 지정기부금
- 3) 비지정기부금

나. 손금산입한도액

<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액

구 분	손금산입한도액
법정기부금	$(\text{기준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times 50\%$
지정기부금	$(\text{기준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 \text{법정기부금 손금용인액}) \times 10\%$

Ⅱ. 비영리 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일반론

2. 법인세법상 기부금 관련 규정

다. 기부금 귀속시기

라. 현물기부금평가

<표> 현금기부금 평가액

구분	현물기부금 평가액
① 법정기부금, 특수관계인이 아닌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	장부가액
②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바. 기부금조정명세서 서식

Ⅲ. 우리나라 기부금 현황

1. 법인사업자의 기부 및 기부금 현황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가. 기부금 신고 현황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부금 신고법인 수는 각각 460,614개 기업, 482,574개 기업, 517,805개 기업, 550,472개 기업, 591,694개 기업, 645,061개 기업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같은 기간 법정기부금 총액은 각각 2조 4,233억원, 1조 4,731억원, 1조 7,848억원, 1조 7,999억원, 2조 234억원, 1조 4,09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1년을 제외한 2015년 까지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6년에 법정기부금이 크게 감소하였음

Ⅲ. 우리나라 기부금 현황

지정기부금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1조 6,446억원 2조 6,391억원, 2조 8,696억원, 3조 1,063억원, 2조 7,546억원, 3조 2,37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 기업의 기부금 합계액은 각각 4조 680억원, 4조 1,122억원, 4조 6,544억원, 4조 9,062억원, 4조 7,782억원, 4조 6,47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부금 합계로 보면 법인 기업의 기부금 규모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부금 신고법인 및 기부금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Ⅲ. 우리나라 기부금 현황

<표> 기부금 신고법인 및 기부금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연 도	신고법인 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부금 합계	평균기부금액(원)
2011년	460,614	2,423,360	1,644,685	4,068,045	8,831,787
2012년	482,574	1,473,145	2,639,131	4,112,276	8,521,544
2013년	517,805	1,784,892	2,869,602	4,654,494	8,988,893
2014년	550,472	1,799,954	3,106,338	4,906,292	8,912,882
2015년	591,694	2,023,522	2,754,680	4,778,202	8,075,461
2016년	645,061	1,409,470	3,237,686	4,647,156	7,204,211

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참조

Ⅲ. 우리나라 기부금 현황

나. 기업 형태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

2016년 기부금을 신고한 기업의 기업규모를 살펴보면, 일반기업이 127,433개 기업이고, 중소기업이 517,628개 기업임 법정기부금의 경우 일반기업이 1조 2,528억 원이고, 중소기업이 1,565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정기부금의 경우 일반기업이 2조 7,752억 원이고, 중소기업이 4,624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일반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기부금 신고를 한 기업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의 기부금 규모는 중소기업의 기부금 규모보다 월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Ⅲ. 우리나라 기부금 현황

2016년 1,922개의 상장기업은 법정기부금 6,683억원과 지정기부금 1조 5,280억원을 기부하여 총 2조 1.863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음 같은 기간 비상장 기업은 643,139개 기업이며, 비상장 기업이 기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7,511억원과 지정기부금 1조 7,096억원으로 총 2조 4,608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기업의 상장 여부에 따른 기부금 규모는 차이가 큰 편이 아니나,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기부금의 규모는 크게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됨

기업 형태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Ⅲ. 우리나라 기부금 현황

<표> 기업 형태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

(2016년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신고법인 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부금 합계	평균 기부금액(원)
규모별	일반기업	127,433	1,252,877	2,775,217	4조 280억원	31,609,504
	중소기업	517,628	156,593	462,469	6190억원	1,195,959
상장 여부	상장	1,922	658,333	1,528,011	2조 1,863억원	1,137,535,900
	비상장	643,139	751,137	1,709,675	2조 4,608억원	3,826,252

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참조

Ⅲ. 우리나라 기부금 현황

다. 소득금액 규모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

소득금액 규모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을 살펴보면, 결손금이 1억원 이하인 기업은 53,256개 기업이며, 기부한 기부금은 총 4,10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결손금 1천만원 이하인 기업도 100,728개 기업이며, 기업의 기부금은 2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소득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한 기업은 577개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의 기부금 총액은 3조 123억원임
소득금액이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기업은 787개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의 기부금 총액은 2,235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Ⅲ. 우리나라 기부금 현황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소득금액이 결손인 기업도 기부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기업이 기부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소득금액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조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기부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됨

소득금액 규모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Ⅲ. 우리나라 기부금 현황

<표> 소득금액 규모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

(2016년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소득금액	신고법인 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부금 합계
-1억 이하	53,256	144,911	265,914	410,824
-1천만 이하	100,728	3,955	22,667	26,622
0 이하	88,043	1,035	4,782	5,816
1천만 이하	70,492	2,753	4,273	7,026
5천만 이하	119,071	6,974	24,912	31,886
1억 이하	63,459	8,102	31,856	39,957
2억 이하	58,659	12,641	51,802	64,442
5억 이하	50,430	21,783	99,283	121,065
10억 이하	19,216	28,530	77,944	106,474
20억 이하	10,120	25,822	69,132	94,955
50억 이하	6,600	52,022	118,071	170,093
100억 이하	2,346	61,226	85,228	146,454
200억 이하	1,297	44,928	140,661	185,590
500억 이하	787	43,371	180,218	223,589
500억 초과	557	951,418	2,060,946	3,012,364

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참조

Ⅲ. 우리나라 기부금 현황

2. 개인의 기부 및 기부금 현황

가. 기부금 신고 현황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각각 662,523명, 860,547명, 852,556명, 104,627명, 16,200명, 7,162명이며, 같은 기간 특별소득공제액계는 각각 1조 7,452억원, 2조 254억원, 2조 371억원, 4,369억원, 1,244억원, 839억원으로 나타남

한편 2014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2014년 부터는 기부금특별세액 신고인원이 각각 435,360명, 462,693명, 385,058명이며, 세액공제계는 747,832억원, 947,802억원, 949,71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개인의 기부 및 기부금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Ⅲ. 우리나라 기부금 현황

<표> 개인의 기부 및 기부금 현황

(2016년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기부금특별소득공제		기부금특별세액공제	
	신고인원	소득공제액계	신고인원	세액공제계
2011년	662,523	1,745,299	-	-
2012년	860,547	2,025,424	-	-
2013년	852,556	2,037,163	-	-
2014년	104,627	436,966	435,360	747,832
2015년	16,200	124,454	462,693	947,802
2016년	7,162	83,995	385,058	949,712

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참조

Ⅲ. 우리나라 기부금 현황

나. 종합소득 규모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

2016년 기준 종합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납세자는 185명이며, 종합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납세자의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은 3억 52백만원으로 1인당 19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같은 기간 종합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12,953명이며, 종합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의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은 65억 17백만원으로 1인당 50만원의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종합소득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58,969명이며, 종합소득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납세자의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은 1,958억원으로 1인당 322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Ⅲ. 우리나라 기부금 현황

종합소득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납세자(11,763명)의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은 620억원이며, 1인당 기부금은 약 5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종합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7,274명)의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은 2,777억원이며, 1인당 평균 3,818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종합소득금액이 많을수록 평균 기부액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종합소득금액이 없더라도 기부를 하는 기부자는 상당한 것으로 판단이됨 이는 종합소득자가 기부를 하는 것이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함

종합소득 규모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Ⅲ. 우리나라 기부금 현황

<표> 종합소득 규모별 기부자 및 기부금 현황

(2016년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종합소득	신고인원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액 평균
0	185	352	1.903
1천만 이하	12,953	6,517	0.503
2천만 이하	40,355	31,242	0.774
4천만 이하	91,049	97,953	1.076
6천만 이하	69,133	104,410	1.510
8천만 이하	54,624	106,790	1.955
1억 이하	38,300	94,230	2.460
2억 이하	58,969	195,880	3.322
3억 이하	11,763	62,063	5.276
5억 이하	7,615	56,501	7.420
5억 초과	7,274	277,769	38.187

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참조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1. 법인세법(기부금단체) 관련

가. 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법법§24, 법령§36)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정부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 단체'를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 심사 후 기획 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로 변경
- '기타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단체'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 지정 심사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로 변경

* 2018. 2. 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 등은 2020. 12. 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1. 법인세법(기부금단체) 관련

나. 지정기부금 범위 조정 (법령§36)

○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 등록된 영업자 단체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 2018. 2. 1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1. 법인세법(기부금단체) 관련

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강화 (법령§36 ①)

□ 신청시점에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지정요건 개선(개정전 : 사후관리 요건이 혼재)

→ 지정요건에 사후관리 요건이 혼재하여 사후관리 요건으로 이관)

- 2014. 2. 21. 이후 지정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1. 법인세법(기부금단체) 관련

라.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 강화 (법령 §36)

□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 정비(위반시 지정취소)

- 2014. 2. 21. 이후 지정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다만,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의 국세청 홈페이지 공개는 2014. 1. 1. 이후 기부금을 모금,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1. 법인세법(기부금단체) 관련

마. 기부금단체의 의무 강화 (법령 §36)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 단체도 기부금단체의 의무 이행 (단, 종교단체는 예외 인정)
-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등 공시, 전용계좌 개설·사용을 의무 규정에 추가

*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1. 법인세법(기부금단체) 관련

바. 기부금단체의 추천·지정시기 조정 (법령§36의2, 법칙§18)

○ 기부금단체 추천시기 조정

-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추천시기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로 단일화 (1·4·7·10월)

○ 기부금단체 지정시기 조정

-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시기를 매분기 말일로 단일화 (3·6·9·12월)

* 2018. 4. 1. 이후 지정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1. 법인세법(기부금단체) 관련

사.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법령 §36 및 §36의2)

○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장소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

- (기존) 해당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 (개정) 해당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 2014. 1. 1. 이후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1. 법인세법(기부금단체) 관련

아.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시기 변경 (법령 §36)

○ 공개시기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에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

* 2019. 1. 1. 이후 공개분 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1. 법인세법(기부금단체) 관련

자.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지정취소 업무 (법령 §36 및 §36의2)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단체의 사후 관리 및 지정취소 건의는 국세청장, 지정취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

- (개정전) 지정, 지정취소, 사후관리 :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

* 2014. 1. 1. 이후 점검대상이 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주무관청 및 해당 법인에 대해 지정 취소대상임을 통지

- 주무관청 및 해당법인은 1개월 이내에 의견 제시 가능

* 2016. 1. 1. 이후 지정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1. 법인세법(기부금단체) 관련

차. 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된 단체의 지정취소 사유 및 사후적발시 지정 취소 근거 신설 (법령§36, §36의2)

○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지정을 거부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개정전)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사후적으로 지정취소 사유 적발시에는 재지정 거부할 수 있음

* 2014. 1. 1. 이후 점검대상이 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가.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 보완(상증법§16, §48)

-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 5%(10%) 계산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에서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

* 2017. 1.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나. 주식보유한도 예외 사유 확대(상증법§16, §48)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 한도 적용 제외

* 2017. 1.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다. 주식보유기준 조정(상증법§16, §48, 상증령§38)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10%에서 5%로 하향 조정

* 2017. 7.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출연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는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 2018. 1.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라.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지출 강화 (상증법§48 ②,§78 ⑨)

○ 주식 5% 초과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1%,
주식 10% ~ 20%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은 3%)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의무화

- 미사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미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마.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 (상증령§13 ⑤)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5년주기) 기관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

* 2018. 2. 13. 이후 최초로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 받으려는 분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강화 (상증법§50, §78 ⑤, 상증령§43 ①)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범위 확대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별지 1호 서식) 제출하도록 의무화(종전, 면제)

*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종전, 가산세 면제)

-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 0.07%

*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주식 보유한도 20%를 적용받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의결권 행사시 10%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 결산서류 등 공시범위 확대 (상증법§50조의3, 상증령§43의3 ③)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도 공시

* 2017. 2. 7. 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아.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준 마련 (상증법§50의4 신설)

○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이행시 공익법인 회계기준(2017. 12월 제정) 적용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해당 근거 법률에 따른 회계기준(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학교법인의 회계기준 규칙) 적용 가능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자. 결산서류 등의 자율공시 제도 도입 및 서식 신설 (상증령§43의3 ④, 상증규칙§25 ⑦, 별지 제31호의2서식)

○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 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 3억원 미만'}의 공익법인등 및 종교단체는 결산서류 등의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선택에 따라 자율공시(자율서식)할 수 있음

* 2014. 2. 21. 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차.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기간 부여 규정 구체화 (상증령§13, §38)

*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은 제외)의 이사수의 1/5 이하여야 함

○ 공익법인이 이사 구성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2개월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의 사망, 사임, 특수관계 없는 이사의 특수관계 성립 등으로 구체화

* 2016. 2. 5.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3.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가.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확대 및 일몰연장 (조특법§74 ④)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 설정 가능

- 손금산입 범위 확대(수익사업 소득의 80% → 100% '14년부터 적용)
-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2016. 12. 31. → 2019. 12. 31.)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3.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나. 기부장려금제도 신설 (조특법§75, 조특령§71)

○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직접 환급하는 기부 장려금 제도 도입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기부장려금 단체에 그 기부금의 100분의 15(2천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기부장려금 환급
- 기부장려금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회계투명성·사후관리·납세협력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 재정부장관이 지정
- 기부금단체가 매년 5, 11월에 국세청에 신청 (2016년의 경우 3월 추가)

* 2016.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4. 부가가치세법 관련

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기술 연구단체 범위 등 명확화 (부령\$45)

- 공익단체인 학술·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무상·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 가치세가 면제

* '15. 2. 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5. 국세기본법 관련

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추가 (국기령\$66 ⑩)

○ 당연지정 기부금단체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법령에 따른 당연지정 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상의 의무이행 사항을 위반하거나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명단 공개

*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5. 국세기본법 관련

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요건 명확화 (국기령§66 ⑩)

-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일을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2월 31일로 통일

* 공포일(2016. 2. 5.) 이후 명단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6. 공시·공개시스템 관련 [결산서류 등 및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가. 결산서류 등 공시 서식 상세화,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홈페이지 변경

- 2014. 1. 1.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하는 서식을 상세화 하였으며, 기존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을 홈택스서비스로 통합하여 운영
- 결산서류 등 공시 관련 동영상 교육자료는 (재)한국가이드스타 사이버연수원 (<http://guidestar.hunet.co.kr>),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_[공익법인] 링크 활용
- (기존) <http://npoinfo.hometax.go.kr> → (현행) <https://www.hometax.go.kr>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공익법인공시] _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시스템] _ [공시의무자 또는 자율공시 대상자]

* '15. 3월 공시하는 법인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6. 공시·공개시스템 관련 [결산서류 등 및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시스템 개발·운영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중 2014. 1. 1. 이후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활용실적이 있는 기부금단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다음 사업연도 3. 31. 까지 공개해야 함

○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에 기부금 공개 시스템을 추가 구축·운영

- <홈택스서비스> [공익법인공시] _ [법정·지정기부금단체 공개] _ [국내지정 기부금 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 한국학교 또는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등]

* 2015. 3월 공개하는 법인부터 적용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6. 공시·공개시스템 관련 [결산서류 등 및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입력·제출 시스템 개발·운영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4. 1. 1.이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건에 대해서는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서비스에 시스템 추가 구축·운영

- <홈택스서비스> [신고/납부] _ [일반신고] _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IV. 최근 기부금 단체 및 공익법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6. 공시·공개시스템 관련 [결산서류 등 및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전자신고 시스템 경로 변경

○ 기존 홈택스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한 현행 홈택스서비스 '15. 2월말 개통·운영

- <홈택스서비스> [신고/납부] _ [일반신고] _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V. 기부금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단체의 대응

1. 세법개정 내용의 강화·완화 분석에 따른 적극적 대비

각 기부금단체마다 세법개정 내용을 엄격하게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지정기부금단체의 강화·완화 분석표 참조

V. 기부금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단체의 대응

가.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대응

구 분	내 용	강화	보통	완화	적용시기
가. 기부금단체 범위조정	1. 어린이집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			○	2018.2.13 이후 (학술단체 등 은 2021년 부 터
	2. 공공기관을 법정단체에서 지정단체로 변경	○			
	3. 학술연구·장학 등 단체를 당연지정단체에서 지정심사후 단체로 변경	○			
	4. 기타 지정단체와 유사한 단체를 지정심사후 단체로 변경	○			
나. 지정기부금 범위 조정	1.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등 제외	○			2018.2.13 이후
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강화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강화	○			2014.2.21 이후
라.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 강화	1.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요건 강화	○			가산세부과는 2019년부터
마. 기부금단체의 의무강화	1.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등 공시 전용계좌 개설·사용	○			2019.1.1 이후

V. 기부금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단체의 대응

가.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대응

구 분	내 용	강화	보통	완화	적용시기
바. 추천·지정시기 조정	1. 추천시기 조정		○		2018.4.1 이후
	2. 지정시기 조정		○		
사.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1.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			2014.1.1 이후
아. 모금 및 활용실적 공시시기 변경	1. 모금 및 활용실적 공시시기 변경		○		2019.1.1 이후
자. 사후관리, 지정취소업무 부서 변경	1. 사후관리, 지정취소업무 부서 변경		○		2014.1.1 이후
	2. 주무관청에 지정취소 대상임을 통지			○	2016.1.1 이후
차. 지정취소 사유 및 근거 신설	1. 지정취소 사유 및 근거 신설	○	○		2014.1.1 이후

V. 기부금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단체의 대응

나. 상증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대응

구 분	내 용	강화	보통	완화	적용시기
가.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계산 방법보완	1.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보완	○			2017.1.1 이후
나. 주식보유한도 예외사유 확대	1. 주식보유한도 예외사유 확대			○	2017.1.1 이후
다. 주식보유기준 조정	1.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	○			2017.1.1 이후
	2. 자선 등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조정			○	2018.1.1 이후
라.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지출 강화	1.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지출 강화	○			2018.1.1 이후
마.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	1.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	○			2018.2.13 이후
바. 투명성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제도 확대	1.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범위 확대	○			2017.1.1 이후
	2.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			2017.1.1 이후
	3. 의결권 행사시 10% 초과 보유분 증여세 부과	○			2018.1.1 이후

V. 기부금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단체의 대응

나. 상증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대응

구 분	내 용	강화	보통	완화	적용시기
사. 결산서류 등 공시범위 확대	1. 결산서류 등 공시범위 확대	○	○		2017.2.7 개시연도
아.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준 마련	1.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준 마련	○	○		2018.1.1 이후
자. 결산서류 등의 자율공시 제도 도입 및 서식 신설	1. 결산서류 등의 자율공시 제도 도입 및 서식 신설	○	○		2014.2.21 이후
차.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 기간 부여 규정 구체화	1.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	○			2016.2.5 이후

V. 기부금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단체의 대응

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대응

구 분	내 용	강화	보통	완화	적용시기
가.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확대 및 일몰 연장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확대			○	2014.1.1 이후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일몰연장			○	2016. 12. 31. → 2019. 12. 31.
나. 기부장려금제도 신설	1. 기부장려금제도 신설			○	2016.1.1 이후

V. 기부금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단체의 대응

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대응

구 분	내 용	강화	보통	완화	적용시기
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 기술 연구단체 범위 등 명확화	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 기술 연구단체 범위 등 명확화			○	2015.2.3 이후

V. 기부금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단체의 대응

마.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대응

구 분	내 용	강화	보통	완화	적용시기
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 추가	1.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추가	○			2019.1.1 이후
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 요건 명확화	2.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요건 명확화		○		2016.2.5 이후

V. 기부금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단체의 대응

바. 공시·공개시스템 관련 지정기부금 단체의 대응

구 분	내 용	강화	보통	완화	적용시기
공시·공개시스템 관련	가. 결산서류 등 공시 서식 상세화,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홈페이지 변경		○		2015.3.1 이후 공시법인
	나.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시스템 개발·운영	○			2015.3월 공개법인
	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입력·제출 시스템 개발·운영		○		2014.1.1 이후
	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전자신고 시스템 경로 변경		○		2015.2월 개통·운영

V. 기부금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단체의 대응

2. 불성실 기부금 단체 정의 숙지

불성실 기부금 단체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숙지하고, 불성실 기부금단체로 낙오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

3.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요건·절차·기간·취소 사유에 대한 대비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요건·절차·기간·취소 사유에 대한 규정을 엄밀히 분석하여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없도록 대비함

V. 기부금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단체의 대응

4.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대한 대비절차

성실공익법인 8가지 요건을 분석하여 대비함으로써 성실공익법인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대비

5. 학술연구단체 등의 당연지정 기부금단체로의 세법 재개정 제안

'정부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 단체'를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 심사 후 기획 재정 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로 변경이 확정됨 우리나라에는 현재 학술연구단체인 학회가 약 8,000개가 학술활동을 있는바, 사실 대부분의 학회들은 유급 사무국 간사가 없어 학회장등 및 몇 임원들이 학회행정을 하고 있음

이번에 학술연구단체 등의 당연지정 기부금단체에서 지정 심사후 단체로 변경되어, 앞으로 제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바 대부분의 학회가 학회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견됨 따라서 세법개정전으로 다시 환원하는 재개정이 요구됨

VI. 결론 - 건강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몇 가지 제안

건강한 기부문화가 확산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첫째, 모범적인 기부모델의 주체가 될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특히 부유층)의 솔선수범적인 참여가 중요함. 그러나 부의 세습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자선적 기부와 부의 사회환원이 쉽지 않은 현실임
- 자원(自願)적 기부활동은 사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도움(존중과 명예)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선적 기부를 크게 하는 사회지도층과 부자(기업가)들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함
- 기부금 관련 기관(비영리기관 및 자선단체 등)들도 거액 기부자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부자들이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나 여건, 전문가 등을 만드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거임

VI. 결론 - 건강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몇 가지 제안

둘째, 기부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 테마를 개발해야 함

- 일회적·충동적·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제한적 기부 테마에서 벗어나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부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미국의 '자선 카달로'나 '기부 가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은 자선단체를 소개하고 신뢰성 있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자선단체의 자료들이 소개되어 홍보 효과를 보고 있음
- 기부의 목적과 사용방법을 기부자가 지정하고 기부자 이름을 딴 독자적인 기금을 설치 운영하거나 사람이나 사물을 기념하는 기금, 꿈을 이루는 기금, 불치병 어린이 환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기금 등 우리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기부 테마를 만들어 기부자의 기부동기에 대한 만족감과 동시에 나눔의 효과를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임

VI. 결론 - 건강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셋째, 세제혜택과 학습 및 교육을 통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

- 기부하는 사람과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보다 더 넓어져야 함. 미국이나 유럽처럼 재단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진 나라만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부에 관계되는 투명함이 전제되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한 것임
- 민간에 기부할 때와 정부기관에 기부할 때 세율혜택의 균형을 맞춰주어 민간단체에 대한 기부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기부에 대한 어려서부터의 교육도 중요함.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살아야한다는 교육은 곧 풀뿌리 기부문화의 원천이기 때문임